

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.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3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4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1. 6.(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제6차사회도시위원회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지적과장 성 인 덕)

- 가. 부동산중개업법개정(2000.1.28공포, 2000. 7. 29시행, 법률제6236호)으로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부과를 중복하여 처분할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부과중 하나의 처분만 할수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부과 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
- 나.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.징수사부는 기관위임사무로서 행정처분규칙과 과태료부과.징수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.징수규칙에 통합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지난 2000. 1. 28 법률제6236호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부과중 하나의 처분만으로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부과대상이 종전의 21개항목에서 4개항목으로 대폭 축소 되었으며

○ 현행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칙과 중복되므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관련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은 물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위 과대료부과징수조례안을 폐지하여 위 행정처분규칙으로 통합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서구를 비롯한 12 개구청에서 통합관리에 따른 의안상정 및 조례안공포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합관리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